

---

---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2

```
(           )
11 [ 1           ]
12 [ 2           ]
13 [           ]
14 [           ]
```

3

```
(           )
15 [           ]
16 [           ]
17 [           ]
18 [ ,           ]
19 [           ]
20 [           ]
21 [           ]
22 [           ]
```

4

```
[           ]
23 [           ]
24 [           ]
25 [           ]
```

**5**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

**6**

```
36  [           ]
37  [           ]
38  [           ]
39  [   ㄱ           ]
40  [           ]
41  [           ]
42  [           ]
```

**1 【 】**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제외, 보험금 산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 】**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자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 】**

가				
가				
1.	200%		가	
2. 1			( 3 )	
가 )			( 2.5% )	
3.		1		
2 (24 )		( 가 )		
1.			가	
			가	

2. 가 ( ) 가 ,

" " " ( " " )  
5  
( " " ) ( )

#### 4 【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5 【 】

가

1.

2. 15 ,

#### 6 【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변경으로 월대체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감액하거나 계약일부터 2년 경과 후부터 증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7 【 】

① 피보험자가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이 계약은 완납종신보험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7일 이전까지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전환되지 아니하며 80세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7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부터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단, 피보험자의 가입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납입 및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 부가된 특약의 잔여납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시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종신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충당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8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9 【 】

가 ( 3 ) 1 가  
가 .

##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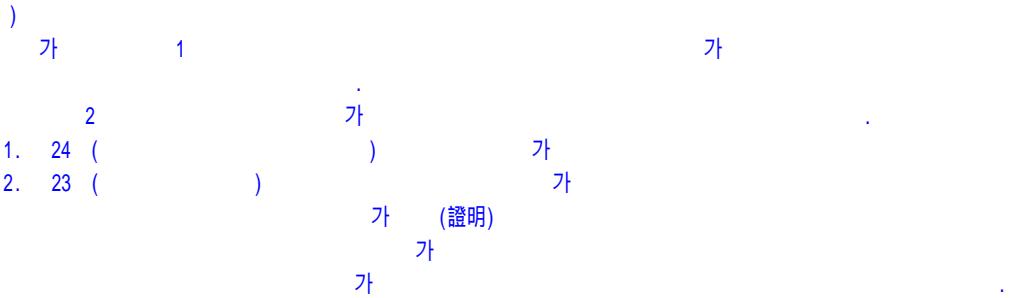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 )

## 1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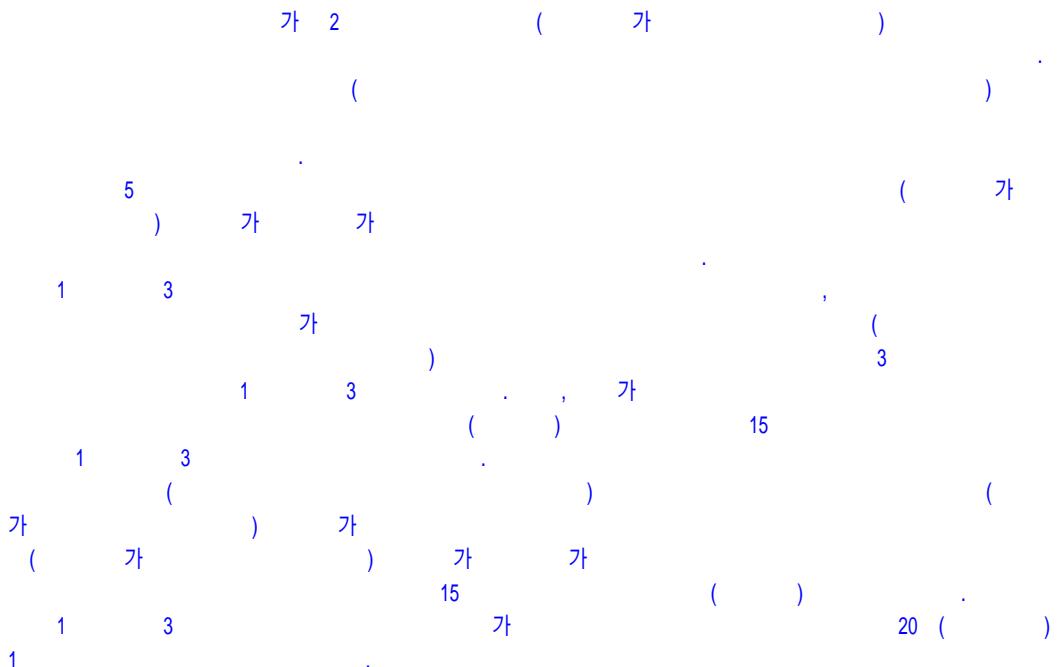
1 ( ) 1 가  
1 " " 1 , " "



## 12 【 2 ]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약환급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단,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13 【 】



## 14 【 】

-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

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 ( )

16 【 】 가 (失踪宣告)  
15 ( , , ) 27 ( ) 2  
2 ) ( “ ” )  
15 ( ) 180  
180  
2  
2 ) 가 ( )

18 【 , 】  
회사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9 【 】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매분기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20 【 】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2.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21 【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22 【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4

### 23 【 】

( " " , " " )  
3 ( ) .

### 24 【 】

가 23 ( ) 가

가

1. 가
2. 가 1 가
3. 2 ( 1 ) 가 ( )
4. 3 ( ) 가 ( " " ) 가

1

가

가

1

"

"

1 ( ) , 가  
23 ( ) 가  
1 .

## 25 【 】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 26 【 】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27 【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28 【 】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29 【 】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0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2 [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3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34 [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③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35 【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6

### 36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7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8 【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39 【     가       】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 40 【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41 【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42 【       】

회사가 과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1)

( 15 )

	가	1	가
	80세 미만 (완납종신보험 전환전)	보험가입금액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80세 이상 (완납종신보험 전환후)	완납종신보험가입금액	

- ※ 완납종신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종신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총당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 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에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완납종신보험가입금액은 80세 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는 118.844%,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는 132.243%를 곱한 금액입니다.

( 2)

( , )

\* " 4 . ( 2002-1 , 2003.1.1. ) "

1.	V01-V09
2.	V10-V19
3.	V20-V29
4.	V30-V39
5.	V40-V49
6.	V50-V59
7.	V60-V69
8.	V70-V79
9. ( )	V80-V89
10.	V90-V94
11.	V95-V97
12.	V98-V99
13.	W00-W19
14.	W20-W49
15.	W50-W64
16.	W65-W74
17.	W75-W84
18. ,	W85-W99
19. ,	X00-X09
20. 가	X10-X19
21.	X20-X29
22.	X30-X39
23.	X40-X49
24.	X58-X59
25. 가	X85-Y09
26.	Y10-Y34
27.	Y35-Y36
28. ,	Y40-Y59
29.	Y60-Y69
30.	Y70-Y82
31.	Y83-Y84
32. 2 1 1	

- " , 가 " " . " A00 (L23.3) R99 가 가  
- " " " " . " " " " " (Y35.5) "

( 3)

1	1. 2. 3. 4. 5. 6. 7. 8. 9.

( )

1. 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체손상을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 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5.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군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4 )

( 31 5 )

( 15 )


( 20 1 )

가

	1	50%
	1	1%

	+ 1%


( ) 1.

, 22 ( )

가

2.

---

---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1

1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실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4 ( )

가

가 가 , 가  
16 ( ) 1 .

5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 , 가  
1. 2. 2. 3. 3.

6 【】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특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7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8 [ ]

9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0 【】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1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2 【 】

" ) 가 ( 1 " ) . 1 가 ( "

13 【 】

가 2 3  
가 . , ,  
( 2 ) , ( “ 가  
12 ( ) 27 ( ) 2 ” )

$$\begin{array}{r} 12 \quad ( \qquad \qquad \qquad ) \\ 180 \\ \hline 3 \\ 2 \quad ) \end{array} \quad \text{가} \quad \begin{array}{l} ( \qquad \qquad \qquad ) \\ 180 \end{array}$$

14 【

1. 가 가 ( ) 2.  
2. 가 1 가 .  
3. 가 .

- 1 가  
1. 1 1  
2. 1 2  
3. 1 3

15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6 【 , 】

4 가

17 【 , 】  
가

5

18 【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9 【 , 】

18 ( )

3

10

1

7

16 ( ) 1

1. 가 : 1 : 1 50%, 1 1%  
2. : +1%

6

20 【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	지급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1	1. 2. 3. 4. · 5. 6. 7. , 8. , 9. ,
2	1. 2. · 3. 4. 10 가 5. 2 7 4 5 3 11 2 7 가 3 6.
3	1. 2. 3. 3 2 4. 5. 3 2 6. 5 가 7. 가 가 4 가 8. 10 가 9. ( ) 10. 4 5 6 가 4 5 6 가
4	1. 2. 3. 4. · 5. 3 1 6. 3 1 7. 가 5cm 8. 가 가 9. 가 가 1 가 3 가 10. 5 가

4	11. 가 가 3 가 12. 10 가 13. 5 가 14. 15. ( ) 16.
5	1. 2. 3 2 3. 3 2 4. 가 가 5. 가 가 1 가 2 가 6. 가 가 3 가 7. 가 가 8. 가 가 1 가 3 가 9. 5 가 10. 가 2 가 4 가 11. 12. 13. 가 14. ( ) 15. 16.
6	1. 2. 3 1 3. 3 1 4. 가 3cm 5cm 5. 가 가 6. 가 가 2 가 7. 가 가 2 가 8. 가 가 1 가 2 가 9. 가 4 가 10. 가 3 가 11. 12. 13. 가 14.

# ( )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1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

##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장애, 안구운동장애, 조절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ㅌ), 구개음(ㅊ, ㅋ), 후두음(ㆁ, 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2.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frac{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Sigma$  \_\_\_\_\_ \* )이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circ}$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circ}$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circ}$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circ}$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 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15. “손가락의 장해 ”**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6.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험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또는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험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강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1

1 【】

가 . ( ) ) 가

( 1 가 . , 2 , 1 )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가

- 15

4 【】

가 가 16 ( ) 1 . , 가

5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될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화후 계약은 전화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6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7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8 [ ]

가 가 . ( 3 )  
1 가 .  
2 ( )

9

가 가 가

10

( " "

1 2

11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보험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2

( “ ” ) 가 가 1 가 ( “ ” )

13 【 】

가 2 3

가 12 ( ) 1 . 가 ( 2 ) , ( 가  
 , " " ) 27 ( ) 2 .

12 ( )  
180

2 ) 가 ( ) .

14 【 】 가 .

1. 가 .  
2. 가 ( ) .  
3. 가 .

1. 가 .  
2. 가 .

3. 가 .  
1. 1 1 .  
2. 1 2 .  
3. 1 3 .

15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6 【 】 “ ” .

4 가 .

17 【 】 가 .

5 .

18 【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b>19</b>	<b>【</b>						
18	(	)				,	3
			10				
1							7
16	(	)	1				
1.	가			: 1		50%, 1	1%
2.				:	+1%		
			6				

<b>20</b>	<b>【</b>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가. 지급사유(약관 제12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나. 지급액

① 7년만기      ② 10년만기      ③ 15년만기      ④ 2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85.7%	1년이상 2년미만	90.0%	1년이상 2년미만	93.3%	1년이상 2년미만	95.0%
2년이상 3년미만	71.4%	2년이상 3년미만	80.0%	2년이상 3년미만	86.7%	2년이상 3년미만	90.0%
3년이상 4년미만	57.1%	3년이상 4년미만	70.0%	3년이상 4년미만	80.0%	3년이상 4년미만	85.0%
4년이상 5년미만	42.9%	4년이상 5년미만	60.0%	4년이상 5년미만	73.3%	4년이상 5년미만	80.0%
5년이상 6년미만	28.6%	5년이상 6년미만	50.0%	5년이상 6년미만	66.7%	5년이상 6년미만	75.0%
6년이상 7년미만	20.0%	6년이상 7년미만	40.0%	6년이상 7년미만	60.0%	6년이상 7년미만	70.0%
		7년이상 8년미만	30.0%	7년이상 8년미만	53.3%	7년이상 8년미만	65.0%
		8년이상 9년미만	20.0%	8년이상 9년미만	46.7%	8년이상 9년미만	60.0%
		9년이상 10년미만	20.0%	9년이상 10년미만	40.0%	9년이상 10년미만	55.0%
				10년이상 11년미만	33.3%	10년이상 11년미만	50.0%
				11년이상 12년미만	26.7%	11년이상 12년미만	45.0%
				12년이상 13년미만	20.0%	12년이상 13년미만	40.0%
				13년이상 14년미만	20.0%	13년이상 14년미만	35.0%
				14년이상 15년미만	20.0%	14년이상 15년미만	30.0%
						15년이상 16년미만	25.0%
						16년이상 17년미만	20.0%
						17년이상 18년미만	20.0%
						18년이상 19년미만	20.0%
						19년이상 20년미만	20.0%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

---

가

---

---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약관

1

1 [ ]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가

- 15

4 【】

가 가 16 ( ) 1 . , 가

5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일 지급되는 기준수입연금 협약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화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전환 계약의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화후 계약은 전화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6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에 제1항에 의한 해약회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7 [ ]

이 특약의 보험기가운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가운 합니다.

8 ( )

가

가

( 3 )

1 가

2 ( )

9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0 【】

( “

”  
）

1 2

11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2 【 】

.( 1 “ ” ) 가 ( “ ” )

13 【】

2 3 가

12 ( ) 27 ( ) 2 가 ( 2 ) , ( " ) 가

12 ( ) 180  
180  
3  
2 ( ) 가 ) 가 ( ) 가  
12 ( ) „ ) )  
“ 5  
5  
가 가 5

# 14 【 가 】

1. 가 가 ( ) 2

2. 가  
가

3. 가  
1  
1. 1 1  
2. 1 2  
3. 1 3

1 가

### 15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6 【 】

4 가

### 17 【 】 가

5

### 18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9 【 】

① 18 ( )

3

10

② 1  
”

( 4) “

6

### 20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가족수입연금(약관 제12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매월 10만원 (최소 5년간 보증지급)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4)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가족수입 연금 (제12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 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 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 1년초과기간: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

가

11 (

) 7

가

1

1

가

2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9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10 【】

( 3 ) 2 6 ( ( " " ) ) 가 ( " " ) 가 .

11 【 】

10 ( ) 180  
180  
2  
2 ) 가 ) 가  
10 ( .  
4 .  
가 .  
가 .  
4 .  
5 .  
5 .  
1.  
2. 1 .  
1 .  
1 (

12 【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혜택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혜택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3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4 【 】

13 ( )

5

3

10

1

7

12 ( ) 1

1. 가 : 1 50%, 1 1%  
2. : + 1%

5

15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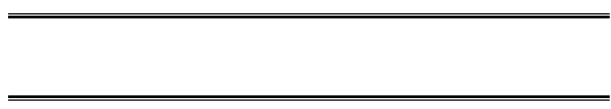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셜보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6 【 】**

가	가	10 ( )
가	가	. . . . .
1	1	가
. . . . .		
2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8 【 】

( " )

1 2

## 9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0 【 】

가 ( 2 ) 가 ( 1 ) 가 ( " " )

## 11 【 】

10 가 , ,  
27 ( 2 ) 가  
10 180 180

3 ) 가 ( )

## 12 【 】

가 가

1. 가 가

2. 가 가

3. 가 가

1 1 1  
1. 1 1  
2. 1 2  
3. 1 3

## 13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4

### 14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5 【 ]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5

### 16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 1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와 동일

---

---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를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

- ①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중 제1급장해 이외의 보험금지급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2 ( )**

**7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8 【 】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3 ( )

## 10 【 】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3(수술의 종류 및 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체(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 】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2 【 】

가

가

## 13 【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4

## 14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5 【 】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 16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11 )

	가
	( 1 ) 1 : 20 2 : 50 3 : 100

( 2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것을 말합니다.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II. 신생물	C00-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귀 및 푸지돌기의 질환	H60-H95
IX.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X.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XI.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XII.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L99
XIII.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IV.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XV.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XVI.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V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V01-Y98

( )

1. ( , )
- 2.
3. ,
4. , ( - ), ,
5. ( , )

<b>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 乳房의 手術)</b>	1. 식피술(植皮術)(25㎠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 切斷術)	2종 2종
<b>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b>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 骨結核 手術)[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上顎骨, 下顎骨, 頸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 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觀血手術)[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韌帶 觀血手術)[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 염, 결절증, 점액종수술(筋炎, 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2종 2종 2종 1종 2종 2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1종
<b>호흡기, 흉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b>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조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1종 2종 2종 2종 3종
<b>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鼻의 手術)</b>	19. 관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込術) 25. 비적제술(鼻摘除術)	2종 1종 3종 2종 3종 2종 2종
<b>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b>	26. 이하선종양적출술(耳下腺 腫瘍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頸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臟, 膽囊, 膽道, 脾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 치핵근본수술(痔瘻,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한함]	2종 1종 3종 3종 2종 2종 1종 1종 2종 2종 1종 2종 2종 1종 2종 3종

노, 성기의 수술 (尿, 性器의 手術)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腎臟, 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종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종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3종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2종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1종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3종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全摘除術)은 제외함]	1종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縫縮術)	1종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종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2종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隆脫手術)	2종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증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絕術)은 제외함]	2종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경질적조작(經膠的操作)은 제외함]	2종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 卵巢 手術)	1종
내분비기의 수술 (내분비기의 手術)	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腦下垂體腫瘍摘除術)	3종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종
	55. 부신 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2종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종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捏除術)]	2종
	58. 관절적 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 脊髓腫瘍摘出手術)	3종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종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1종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종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1종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1종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종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 (觀血的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1종
	66. 홍채전후유착 박리술(虹彩前後癒着 剥離術)	1종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2종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2종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종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종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종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純織充填術)	2종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2종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종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 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2종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종
	77. 중이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2종
	78. 내이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종
	79.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3종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 온열요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 手術)	3종 1종 2종
상기 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 (腦, 喉頭, 胸部, 腹部 臟器手術) [검사, 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 를 한도로 함]	2종 2종 1종 2종 1종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 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종

( )

1.

"

"

"

"

2.

"

"

"

"

"

3.

"

"

"

"

"

"

가

가

(별표4)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

---

---

---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될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 ]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임워크업여유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가

가

1

1

가

2

(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8 【 】

1 2

###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0 【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 】

가  
( “ ” ) ( “ ” ) 4

### 12 【 】

11 ( ) 1 120  
11 ( ) 2 2  
180  
가 11 ( ) 2

가  
가

가

### 13 【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 14 【 ]

- ① 수의사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사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5 【 ]

14 ( ) , 3  
, 10

1 7

13 ( ) 1

1. 가 : 1 50%, 1 1%  
2. : +1%

5

### 16 【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이 특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 수의 합계가 730일을 초과하여 회사가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  
3. 갱신된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연령이 70세가 되는 날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 ④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일수 산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이 특약의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17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11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별표2)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별표2) “질병 및 재해 분류표” 와 동일

---

---

---

---

**1 【 】**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으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매출이 승인된 때)를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이하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6 【 】**

가  
가

2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 " ( )

##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0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사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11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말기신부전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하는 말기신부전으로서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고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그 말기신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신장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은 상기의 병원 또는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 13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간경화”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간경화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간초음파검사,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14 【

】

”( 1 )	가	가	“
1.	가	:	
2.	가	:	
3.	가	:	
4.	가	:	

**15 【**

】

( 2 ) 2 3 가 , , , 1  
 가 14 ( , , , 1  
 1 ( 7 ) ( " " ) 가  
 180 180  
 3 가  
 가 , , , 14 ( ) 가  
 .

**16 【**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7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

】

17 ( ) , , 3  
 10 .  
 1 , , , 7

16 ( ) 1

1. 가 : 1 50%, 1 1%  
 2. : +1%

5

**19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4 1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 14 2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 14 3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말기신부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0만원

**( 14 4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간경화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0만원

(주)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별표2)

**장해등급 분류표**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3)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약관에 규정하는 “말기신부전”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말기 콩팥(신장)병	N18.0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화”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증	K70.2
2. 알콜성 간경화, 알콜성 경화	K70.3
3. 간의 섬유증 및 경화	K74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재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

---

1

1 【 】

“ ”, “ ”, “ ” ) 1 가 .(

1 “ ” .

2 “ ” .

1 “ ” .

1 “ ” .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가 90 11 ( " " " ) 1

4 【】

가 가 ,  
16 ( ) 1  
가 . .

5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6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7 【 】

## 8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9 【 】

( ) “ ”  
” ” )

1 2 . .

## 10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1 【 “ ” “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3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정체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홀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4 【 】

가 “  
”( 1 ) .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때 : 진단급여금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 수술급여금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 입원급여금

#### 15 【 】

가 ( , , )  
( 2 ) 2 3 가  
14 ( , , , , 1 ) .

1 가 180  
180  
3 ( 2 ) 가  
2 ) 가  
1 ) 1 가 . ,  
14 ( . , . , . , . ) .

⑥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⑦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⑧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증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⑩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6 【 】

## 4 가

### 17 【 】 가

5

### 18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19 【 】

18 ( ) , 3

10  
1 7

17 ( ) 1

- |      |     |        |    |
|------|-----|--------|----|
| 1. 가 | : 1 | 50%, 1 | 1% |
| 2.   | :   | +1%    |    |

6

### 20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 : 가 1,000 )

( 14 1 )

가 ( 1 )	1	500
	1	1,000
가 ( 1 )	1	150
	1	300
가 ( 1 ),	1	50
	1	100

( 14 2 )

가 ( 1 )	1	300
	2	30
가 ( 1 )	1	90
	2	30
가 ( 1 ),		30

( 14 3 )

가 4	,	5
, , , , 4	,	2

1.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입니다.

2. 제11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별표2)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별표4)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흉곽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격렬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립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1 【 】

가 ) 가

2 【 】

, 가 ) . ( 가

3 [ ]

가 90 11 ( " " " " ) 1

4 【 】

가 가 , 가  
16 ( ) 1 . .  
가 . .

5 【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6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9 【 】

” )  
1 2

## 10 【 】

-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1 【 ” ”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은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的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 【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的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3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습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4 【 】 가 가 가 ( ) ( ) ( )

16 【 】

4

# 17 【 가 】

5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및 납입면제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9 

18 ( )

3

10

1

7

16 ( ) 1

1.	가	:	1	50%, 1	1%
2.		:	+1%		

6

20 【

가

( 1)

( 14 1 )

( : 가 1,000 )

	가 ( , 1 )
	1000 ( , 1 : 500 )

② 상피내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2호)

	가 ( , 1 )
	100 ( , 1 : 50 )

③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3호)

	가 ( , 1 )
	300 ( , 1 : 150 )

④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4호)

	가 ( , 1 )
	100 ( , 1 : 50 )
) 1. 11 (" " " ") 1 ( ) 90	.
2. 11 (" " " ") ,	,

( 2)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 3)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와 동일

( 4)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 5)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의 약관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 6)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

---

**1**

**1 【 ]**

“ ”, “ ”, “ ” )  
 1 가 .( 가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중 1인으로 합니다.

1. 주계약의 피보험자
2.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중 1인
3.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② 특약의 체결 후에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을 제외한 원인으로 제1항 제3호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해지 됩니다.

**3 【 ]**

가 .  
 가 .  
 20 ( ) 1  
 가 .  
 . . . .

**4 【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6 【 ]**

가 .  
 . . . .  
 2 ( )

## 7 【 】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8 【 】

( ) “ ”  
“ ” )

1 2 . .

##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

## 10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 피부암 제외)”(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1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협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3 【 】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8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4 【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골절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16 【 】

이 특약에 있어서 상실(喪失)이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빨거(拔去)하거나 우식증(齲齒症) 또는 외인에 의하여 치아를 뿌리까지 손상되어 치아의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치아교정을 위하여 빨거하는 경우와 제3대구치를 빨거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하 “상실”이라 합니다)

### 17 【 】

		가		가	
1.	( 1 "                " )	:	.		
2.	가	( 3 )	1	( 2 )	
3.	2                6	가	:		( 1 )
4.	가		:	( 1 )	
5.	가		:	( 1 )	
6.	가		:	( 1 )	
7.	가		:		
8.	가		4		:
9.	가	( 2 )	( " " )		
10.	:	( 1 )			
	가	:			

### 18 【 】



19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거를 염두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  

4 가

# 21 【 가 】

5

22 【 】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수술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3  

22 ( )

3

10

1

7

20 ( ) 1

1. 가 : 1 50%, 1 1%  
2. : + 1%

6

24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 17 1 ) ( : 가 1,000 )

	가
	. 15 : , . 15 : 1,000

( 17 2 )

	가	2	6	1	가
	1				2,000
	2				1,500
	3				1,000
	4				500
	5				300
	6				100

( 17 3 )

	가	( , 1 )
	1	1,000 : 500 )

( 17 4 )

	가	( , 1 )
	1	100 : 50 )

( 17 5 )

	가	( , 1 )
	1	100 : 50 )

( 17 6 )

	가	( , 1 )
	1	300 : 150 )

( 17 7 )

	가	
1	1	( 1 ) 20
	2	( 1 ) 50
	3	( 1 ) 100

( 17 8 )

	가		4
	3	1	1

( 17 9 )

	가	( 1 )
	20	

( 17 10 )

	가	( 3 )
	1	20
) 1.	10 (	) 1
)	90	.
2.	10 (	)
		,
		.

( 2)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셜보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 3)

무배당 신정기특약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와 동일

( 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 와 동일

( 5)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 6)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와 동일

( 7)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와 동일

( 8)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별표3)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와 동일

( 9)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목의 골절	S12
3.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팔주지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8.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3.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4.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

---

# 1

## 1 【 】

가 .( )  
 “ ” “ ” “ ” “ ” “ ” “ ” “ ” “ ” “ ”  
 1  
 가 .  
 ) 가 ( 가 .( ) 가 , 가 .  
 .

	( , , )
	( , , )
	(5 , 10 , 15 , 20 )

## 2 【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등)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3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 5 【 】

( ) 가 .

## 6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혜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 이라 합니다)

3 ( )

## 7 【 ]

가  
( 1. “ ” )

## 8 【 ]

1 가 , 3  
2.5%

## 9 【 ]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4

## 10 【 ]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11 【 ]

10 ( ) , 3  
7 ( ) 가 10  
          , 1  
          < 2> “ ”  
          1  
          가  
          , 1  
          가  
          , 1  
          가

5

## 12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약관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 )

( 7 )

, , 가 .

가.

1)

		가		
		(10 )		
		, 11 10 (10 )		(5%, 10%)
		50% 100% 가 10 11 (10 )		

2)

		가		
		(10 )		
		, 11 10 (10 )		(5%, 10%)
		50% 100% 가 10 11 (10 )		
		가 ( , 10 ) 가 11 가 11 )		
		가 11 50%		

	(5 , 10 , 15 , 20 )		

	가
	,

1. 「 」 2.5% ) 1 ( 1 1 , 4 1 , 7 1 , 10 1 ) 가  
3. (5%, 10%)

4. 10 ( ) 10

5. (5 , 10 , 15 , 20 ) 가  
6. 5 6 “ ”

7. , 3 , 6 「 」 , 3 , 6

( 2 )

구분	부리기간	지급이자	
생존연금 (제7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1 【 특약】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2 【 특약】

(1) 1 2 가  
1 2 가  
(2)

, 1 가 ( " " )  
1. 1 " " 가 ( " " )  
2. 2 " " 가 ( " " )  
(3) 2 「 1 5 」 「  
.

(4) 2 가  
.

1. 2 1  
2. 2 2  
가  
3. 3 " " ( " " )  
(5) 가 가  
.

(6) 가 , 가 가  
.

(7) 2 2 가  
.

## 3 【 특약】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4 【 특약】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_\_\_\_\_

1	.
2	( )
3	
4	,
5	
6	, , ,
7	( , )
8	
9	, , , , ,
10	( , , , , , )
11	( , , , , )
12	
13	,
14	
15	( )
16	( )
17	
18	( ), , ,
19	
20	( )
21	( )
22	( )
23	( )
24	
25	
26	
27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 가 )
34	
35	( )

( 2)

2002-1 , 2003.1.1 )

4

(

1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2		I60 ~ I69
3		E10 ~ E14
4		I10 ~ I14
5		A15 ~ A19 B90

5

( 3)

무배당 알리안츠 유니버설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 와 동일

---

---

## 1 ( )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2 ( )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3 ( 가 )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増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 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연령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 (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율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 4. 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4 ( )**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 됩니다.

#### **5 ( )**

-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 **6 ( )**

-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

1 【 】

, 가

가

( “ ”, “ ”, “ ” )  
1

가

가 , 8 ( )  
가 .

2 【 】

1 2

3 【 】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4 【 】

1

5 【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 로 대체합니다.

2 ( )

6 【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

8 【 】

5 ( )  
( “ ” ) 6

3

가 가

( “ ” )

## 9 【 】

가

,

가

가

## 10 【 】

가 8 (

)

4

## 11 【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1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2 【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13 【 】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4 【                  】

13 (                  )

3

,                  10  
1                  가

,                  가

1

5

15 【                  가                  】  
8 (                  )  
8 (                  )

( "                " )                  가

                가                  8 (                  )                  17 (                  )  
                )                  가                  12

가

                3                  가                  3                  "                  "  
                "                  "                  9 (                  )                  1                  5

16 【                  】

-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17 【                  】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            】

1.     (     "     "     )     (     가  
      ,     ,     ,     ,     5     ,     ,  
      .     ,     (     ,     )     5     )  
      .     (     "     "     )     )     가 5

## 2 【            】

## 3 【            】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4 【            】

-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5 【            】

1.     가  
2.     .     가  
3.     1     (     ,     )     ,     .     가 5     6     5  
      1     1     2     .     ,     3  
      .     가  
      1     .     가  
      .     .

## 6 【            】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